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7
----------	------

발의연월일 : 2016. 8. 25.

발의자 : 민홍철 · 전현희 · 김경협  
임종성 · 김현권 · 이찬열  
홍문표 · 최도자 · 박재호  
김상희 · 우원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2016년 4월말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률이 99.9%에 이르고, 154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38개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물리적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완료단계에 이르러 혁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관련 계획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혁신 도시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장기 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해당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직접 수행, 지원하는 주체를 말함)가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근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

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

시·도지사가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 구소 등과 협력하여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규정사항(안 제5조의2제2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기본방향, 여건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의 현황·기능분석에 관한 사항,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기관유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절차(안 제5조의2제3항)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혁신도시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 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하도록 함.

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 근거 마련(안 제5조 의2제4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안 제5조의2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을 “(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력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학·연 클러스터”를 “혁신도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등의 여건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의 현황 및 기능분석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을 통한 혁신도시등의

##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등의 발전에 필요한 기관의 유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도시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혁신도시별로”를 “각 혁신도시에 대한”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성과”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혁신도

시 지역발전계획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가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이하 "산·학·연 클러스터"라 한다)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유효 활용에 관한 사항</li> <li>3.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ol>	<p>제5조의2(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 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력하여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혁신도시 지역발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혁신도시등----- -----</li> <li>2. 혁신도시등의 여건에 관한 사항</li> <li>3. 이전공공기관의 현황 및 기능분석에 관한 사항</li> </ol>

4. 대학 · 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 · 도지사가 산 · 학 ·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여건에 따라 산 · 학 ·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 · 학 ·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

4.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을 통한 혁신도시등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등의 발전에 필요한 기관의 유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도시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 · 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

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  
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성  
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  
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  
· 학 · 연 클러스터의 구축 실적  
및 구축 수행과정의 적정성,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 각 혁신도  
시에 대한 -----  
----- 혁신  
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  
-----  
-----  
-----  
-----.  
-----.

<삭 제>